

정비계획 이행결과 통보서

통보자	성명	
	생년월일	
	주소	(전화:)
지하 시설물	명칭	
	위치	
정비계획 이행결과		

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
위와 같이 정비계획 이행결과를 통보하오니 위 지하시설물과 관련한 중점관리대상
지정을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정비계획 이행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·사진 등

년 월 일

통보자: 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